

긴급입찰공고 사유서

1. 용역요지

- 가. 용역명 : 몽골 울란바토르(Ulaanbaatar) 신공항 경유 철도 신설 예비타당성조사
- 나. 용역기간 : 계약일로부터 140일간 (2019. 12. 16. 한)
- 다. 사업예산 : 금500백만원

2. 긴급입찰공고 사유

가. 사업의 성격

- 본 용역은 해외건설촉진법 제15조의4 및 국토부훈령 제1151호 제8조제4항에 의거, 우리기업의 해외인프라도시개발사업 진출 지원을 위해 수행하는 용역임
- 몽골 정부는 울란바토르 시의 급속한 도시화에 따라 부족한 교통인프라를 확충하고 교통체증 및 소음, 진동 등을 저감하고자 도시철도 건설, 화물철도 우회 등 대안을 마련 중에 있음
- 또한 몽골은 신북방 정책과 동아시아 철도공동체(EARC) 구현의 핵심국가로써, 철도인프라 건설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한국 측에 철도 협력 및 몽골철도사업 참여를 요청하였음
- 따라서 본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사업여건을 분석하고 수요 및 기술조사, 재무 및 법률 타당성을 검토하여 몽골 정부 向 사업제안 시 활용코자 함

나. 긴급입찰 사유

- 본 사업은 사업주가 현지 정부 면담 시 철도협력 요청을 받아 제안하는 사업으로, '20년 한-몽 수교 30주년 정상회담 의제 발굴 시 제안을 위해서는 연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한 조속한 사업검토가 필요한바, 긴급입찰공고를 통한 적기 자료 활용이 필요
- 정상적으로 “협상에 의한 계약”을 추진할 경우(공고기간 40일) 최종 자료 작성을 위한 기간이 부족하므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에 근거하여 공고기간 단축 필요